

② 개정 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(생략)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· 2. (생략) 3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<u>0.6원 <단서 신설></u>	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0.7원.</u> 다만,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<u>0.6원으로 한다.</u>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